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72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6
2.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7
가. 개정안의 내용	7
나. 검토의견	9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요	9
(2) 군복무크레딧 보장 강화	12
(3) 출산크레딧 보장 강화	15
다. 관계 기관 의견	17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7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5.
- (3) 회 부 일 : 2024. 9.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각 근거 법률에서 연금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

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또,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으로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과하며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따른 연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에 대하여는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 또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공무원·군인연금) 부담할 수 있도록(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¹⁾

1)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외에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²⁾

□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률에 국민연금급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려면 국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³⁾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에 따른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 국가의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제3조의2(국가의 책무)가 신설될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국가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될 경우 현재 국가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있지 않은 국민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청년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금 충당부채를 산정·계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바로 확정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이나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의견이 제시되었고,⁴⁾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의결되었음.

□ 참고로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92.1%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아울러 남인순의원(의안번호 제176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334호), 소병훈의원(의안번호 제609호),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808호), 한정애의원(의안번호 제1056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505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및 김남희의원(의안번호 제5233호)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8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908637호) 체계자구심사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기획재정부 의견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지급보장 조항은 모수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려는 것임.
- 군복무크레딧에 대해서는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최소 복무기간(현행 6개월)을 삭제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군복무 완료 시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18조).
 - 출산크레딧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자녀당 12개월씩 인정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노령연금</u>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u>노령연금</u>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u>해당 병역의무</u> 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u> <u><후단 신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u>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u> 2. <u>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u> ②·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u> <u>-----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12개월-----.</u> <u>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단서 삭제></u> <u><삭제></u> <u><삭제></u>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현행	개정안
	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요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군복무·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나 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가입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군복무크레딧(제18조), 출산크레딧(제19조) 및 실업크레딧(제19조의2) 등 총 3종의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법」 제18조⁵⁾에 따른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⁶⁾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5)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6)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가입자에 대하여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7)에 따른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되며,⁸⁾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함.

□ (출산크레딧) 「국민연금법」 제19조⁹⁾에 따른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¹⁰⁾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후략)

- 7)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다.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 8)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9)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10)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전략)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때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하고, 자녀가 3
 명 이상인 경우에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
 한 개월 수를 추가 산입하되, 최대 50개월까지만 산입되며,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적용되고,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으나, 그 부담 비율은 법령에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30%를 일반회계가
 부담한다는 정부 내부 방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실업크레딧) 2015년 1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¹¹⁾가 신설되
 면서 도입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¹²⁾ 이하인 구직급여¹³⁾ 수급자가 희망하

11)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
 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
 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
 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75%¹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받는 제도임.

(2) 군복무크레딧 보장 강화

□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면서 최소 복무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면,

군복무에 따른 보상이 강화되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부수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제도에는 군복무크레딧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게 되면 제도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타 직역연금에서의 군복무 가입기간 산입제도를 함께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산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2. 소득기준: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13)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1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산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개인 부담으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서만 개인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A값의 50%에 상당하는 소득(2024년 기준 약 150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산입하여주는 등 보상을 강화하게 되면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에서 ‘군복무 완료 시’로 앞당기게 되면, 군복무 완료 시에 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체감할 수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의 보상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에 따른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때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아직 군복무크레딧을 적용받는 수급권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이에 따른 재정소요 발생 시점도 함께 앞당겨지게 되어 단기간 내 증대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면서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군복무 완료 시로 앞당기게 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066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	-15)	2,278	6,495	6,559	15,332	3,0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2023년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군복무 완료 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88.0%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며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음.

□ 아울러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808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952호), 김예지의원(의안번호 제1093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505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및 김남희의원(의안번호 제5233호)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028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하였음.

(3) 출산크레딧 보장 강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5년(1.24명) 이후로 매년 계속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에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현행법상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어 그 도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인바,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자녀당 12개월씩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는 등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실질적인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에서 ‘출산(인지 및 입양 포함) 시’로 앞당기게 되면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증대될 수 있는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면서 그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려는 개정안의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8,576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7,221	7,876	8,563	9,260	9,958	42,878	8,5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2023년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되 현행법에 따른 상한(50개월)을 폐지하고,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82.6%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음.

□ 아울러 남인순의원(의안번호 제189호), 성일종의원(의안번호 제380호),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808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952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505호), 김태년의원(의안번호 제4609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및 김남희의원(의안번호 제5233호)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8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는 모수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